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

심 사 보 고

2003.12.15.(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0월 29일

○ 회부일자 : 2003년 10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임시회 및 제221회 정례회

○ 2003. 11. 10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3. 12. 1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질의답변, 심사보류

○ 2003. 12. 3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질의답변 및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

가. 제안이유

-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투자유치로 고도기술의 도내기업 이전과 지역의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 취득과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1외 2필지
- 사업규모 : 224,254.2㎡(67,854평)
- 사업기간 : 2004~2008(5년간)
- 사 업 비 : 17,000백만원(도비 17,000)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개요

- 총 규 모 : 부지 68천평, 건물 19천평/9동
- 사 업 비 : 235,500백만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04~2013(10년간)
- 사업내용 : 3개분야 9개사업
 - 인프라구축사업(BT,NT 연구장비) - 3개사업(5,500평)
 - 장비개발사업(NMR개발 등) - 3개사업(5,500평)
 - 지원사업 분야(첨단과학체험동 등) - 3개사업(8,000평)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만)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계획은

우리도의 BT, N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사업체 및 연구인력의 유입, 도내 기업체 기술이전 및 첨단분야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를 유치하고자 오창센터 건립부지 224,254㎡를 도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오창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장비를 갖춘 BT, NT기술의 첨단기술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 규모와 유치계획 및 유치효과, 도비 170억원의 재원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동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사업현장을 방문 위치와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003.11.10.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 도비 1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서상 공식적인 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고,
- 2003.12.3. 제2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부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재원 170억원의 재원을 부담할 건설종합본부의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고,
- 2003.12.3. 제2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회신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함.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46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투자유치로 고도기술의 도내기업 이전과 지역의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 취득을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1의 2필지
- 사업규모 : 224,254.2㎡(67,854평)
- 사업기간 : 2004~2008(5년간)
- 사 업 비 : 17,000백만원(도비 17,000)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개요

- 총 규 모 : 19천평/9동
- 사 업 비 : 235,500,000천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04~2013(10년간)

- 사업내용 : 3개분야 9개사업
 - 인프라구축사업(BT,NT 연구장비) - 3개사업(5,500평)
 - 장비개발사업(NMR개발 등) - 3개사업(5,500평)
 - 지원사업 분야(첨단과학체험동 등) - 3개사업(8,000평)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고
계	17,000,000 (도비 17,000,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 매입	17,000,000 (도비 17,000,000)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권소유자 주소칭명	비 고
	지목	소 재 자	수 량					
계	토지	1 건	224,254.2㎡ (67,854평)	17,000,000				
	건물							
	기타							
1	토지	청원 오장 안청 804-1외 2필지	224,254.2㎡ (67,854평)	17,000,000	2004 ~ 2008	한국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오장센터 부지	한국토지공사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자 13호서식) 2 ~ 5호 생략</p>